

# 음악대학 연습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06.15.
개정	2013.06.01.
개정	2015.10.19.
개정	2017.11.15.
개정	2021.09.01.
개정	2022.04.01.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음악대학 연습실에 적용한다. 단, 수업이 배정되지 않은 시간대에 연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음악대학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부 호실의 강의실 및 실기지도실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연습실”로 통칭한다.)

② 대연습실, 소연습실, 스페이스펜타, 시청각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의 연습 용도 대관은 불허하며, 교원(전임 및 비전임 모두 포함)의 클래스 연주, 간담회, 세미나 등의 용도로는 대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연습실”로 통칭하도록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연습실의 운영시간은 매일 08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연습실을 이용하는 자는 22시 45분까지 건물에서 퇴실 완료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 전염병, 시설물 점검, 입시, 논문제출자격시험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습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 연습실의 이용 대상은 음악대학 소속 교원 및 학생(휴학생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습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음악대학 소속 학과(전공)를 다전공으로 선택한 자

※다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을 통칭하여

말한다.

나. 음악대학 소속 학과(전공)으로 수학을 희망하는 교류학생·교환학생 및 특별 수강생

다.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이용원칙)** ① 이용희망자는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이하 “예약”으로 칭한다)을 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② 연습실의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이용 및 예약 가능한 횟수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그랜드 피아노가 비치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피아노 전공자는 우선순위로 예약 신청 가능하다.

④ 온돌이 설치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국악전공자는 우선순위로 예약 신청 가능하다.

⑤ 연습실 이용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의 판단에 따라 예약 1시간 전까지 승인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제5조(예약)** ① 1회당 최소 30분 최대 3시간까지, 최초 1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이후부터는 30분 단위로 예약 가능하다. (단 최초 예약은 1시간 이상만 가능하며, 이후 30분 단위로 가능하다)

② 학생의 예약은 예약일 기준 1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이 공적인 목적으로 예약할 경우, 예약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개인적인 목적일 경우, 예약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랜드 피아노가 비치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피아노전공 학생은 예약일 기준 1주일 전부터, 기타 전공 학생은 예약일 기준 3일 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④ 온돌이 구비된 실기지도실의 경우 국악전공학생은 예약일 기준 1주일 전부터, 기

타 전공 학생은 예약일 기준 3일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⑤ 강의실을 연습실로 활용하는 것은 예약인 기준 월 4회로 제한한다.

⑥ 이용자는 예약승인 이후 예약시간 기준 24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외부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행위

나. 비품 및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는 행위

다. 예약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라. 음식물 반입·흡연·낙서 등 연습실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연습실에 비치된 악기를 임의로 조율하는 행위

바. 연습실을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기타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

사. 예약 후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행위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의 위반 시 조치사항 등)**

① 예약승인 된 이용자가 예약시간 기준 24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하지 않고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No Show), 음악대학이 지정하는 2주 동안 연습실 예약 및 사용이 제한된다.

② 제6조 따라 예약 없이 해당 호실을 이용한 아래와 같이 연습실 예약 및 사용이 제한된다.

1. 1회 적발 시: 1개월

2. 2회 적발 시: 3개월

3. 3회 이상 적발 시: 1년

③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가 학생인 경우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④ 제6조를 위반하여 비품 및 기타 시설을 망실·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변상 시점에서 구입·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2012.6.15.)**

이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1.)**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전산시스템에 반영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음악대학이 관리하는 기타 공간(강의실, 예술관 등)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2021.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음악대학이 관리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2022.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